

4. '숲의 도시 서울' 기반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 한민족의 뿌리가 백두산이듯이 서울의 산과 산림은 서울 문화의 시발점이자 미래
 - 서울은 외곽으로 外四山(삼각산, 덕양산, 관악산, 용마봉)과 내부로 內四山(낙산, 인왕산, 북악산, 남산) 등 안팎으로 수많은 크고 작은 산과 숲으로 중첩 위요된 산과 숲 속의 도시임.
 - 서울 주변 내외곽의 산악지형과 온대림 중부의 풍부한 식생분포의 특징으로 볼 때, 서울은 '산악 지형을 배경으로 산림지대에 위치한' 숲의 도시로 평가할 수 있음.
 - 서울의 산과 숲은 물(한강)과 함께 배산임수로서 도시입지를 공고히 해 온 한편, 서울시민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한 원천이 되어 서울 문화의 시발점이고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서울의 산과 숲은 서울시민의 삶을 간직한 가장 오래된 과거이자 미래가 될 역사·문화자산임.¹⁾
- 서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단시간 녹화에 성공한 나라의 대표 도시이고 수도임.
 -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임.
 - 한국의 산림녹화는 세계적인 성공작이며 세계 4대 조림 성공국가로 인정받고 있음.

[참고자료]

- ☞ 이경준·김의철(2010). 『민둥산을 금수강산으로』. 기파랑. 337~338쪽.
 - 한국은 독일, 영국, 뉴질랜드와 더불어 세계 4대 조림성공국가(국제식량농업기구 FAO 평가보고서)
 - 록펠러재단 WWI(world watch institute, 지구정책연구소) Lester Brown 소장 저서 『Plan B2.0』에서 한 말
재인용: “한국의 산림녹화는 성공작이며 한국이 성공한 것처럼 지구도 다시 푸르게 만들 수 있다”
 - 서울은 이처럼 세계가 인정하는 산림녹화에 성공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기에 녹화성 공신화를 바탕으로 발전해온 '숲의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숲의 도시 서울'에 대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내포한 개념 정립과 발전 구상이 필요
 - 서울이 산과 숲을 기반으로 성장해 오고 있음을 감안하여 서울 위상 정립에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를 담아내는 조치가 필요함.
 - 세계적으로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의 수도로서 '숲의 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여건 및 전망

- 산림 관련 대규모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됨으로써 '숲의 도시 서울'의 이미지 제고 여건이 성숙되어 있음.
 - 2021년 세계 산림총회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임.
 - 2017년 9월 아시아-태평양 도시숲회의(Asia-Pacific Urban Forestry Meeting, APUFM)가 서울

1) 김선미, 2014, 산악문화도시. 11쪽.

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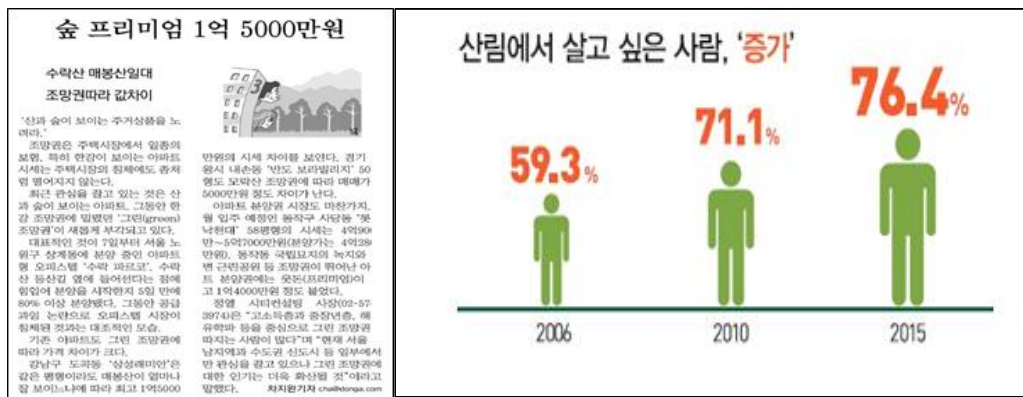
- FAO가 공동개최하는 회의로 아태 지역 도시임업의 현황과 문제 및 미래를 논의할 계획임.
- ‘숲의 도시 서울’ 표현에 서울의 좌표(위치)상 지리적 지형적 식생적 특성, 서울의 형성과 발전에 서울의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 및 역할을 함축한 이미지를 담은 표현이 필요함.

○ ‘숲의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개념을 정립할 역사·문화적 자료가 풍부함.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1990~1996) 발간 『서울민속대관』 (1~13권)
 - 서울의 민속문화와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을 13개 분야에 걸쳐서 수록하고 있는 자료임.
 - 산, 산림, 나무에 관한 문화적인 요소들을 발굴하고 정리 가능함.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1997) 발간 『서울의 산』 .
 - 서울의 진산 북한산과 四山(북악, 남산, 인왕산, 낙산), 조산인 관악산에 관해 기술하여 역사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잘 이해할 수 있음.
- 서울역사편찬위원회/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2013/2015) 발간 『서울2천년사』 (1~40권)
 - 서울의 역사를 선사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40권으로 정리한 자료로서 역사서이지만 산과 숲의 역할을 발췌할 수 있게 함.
- 기타 일반서적들: 염복규(2016)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류보선 외(2016) 『서울의 인문학』, 박경룡(2003) 『서울 역사 이야기』 외.

○ 시민들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산과 숲에 대한 점증하는 관심으로 ‘숲의 도시 서울’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

- 산림이 주는 정서적 안정뿐 만 아니라, 산림의 치유적 효과, 산림의 문화·휴양적 기능 등으로 숲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긍정적임.
- 숲 가까이 있는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높아 역세권 아닌 ‘숲세권’이 등장하고, 산림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점증하는 등 ‘숲의 도시’라는 이미지 제고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함.



출처: 박종호(2017). 산림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개년 1주년 기념심포지엄 자료집).

○ 푸른도시국의 비전과 푸른도시 선언문에 담긴 ‘숲의 도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할 여건이 성숙되어 있음.

- 푸른도시국 비전 : 더불어 사는 숲의 도시, 서울

- 푸른도시 선언문
 - 전문 : 모든 생명은 서로 기대어 살아갑니다. 서울은 그 아름다운 공존관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함께 만들고 가꾸고 지켜나가는 시민 중심의 공원도시! 삶을 재충전하는 발전소, 이웃들이 소통하는 사랑방, 그리하여 시민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숲의 도시!** 이제 서울이 건강한 푸른 도시로 다시 태어납니다.
 - 조문(제1) : 1. 서울은 **산이 지키고** 물이 살리는 생명의 땅이다.
- ‘서울의 산림’을 담아내는 개념으로서 ‘숲의 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숲의 도시로서 古都 서울의 오랜 역사와 문화에 내재된 다양한 잠재력을 발굴하여 기반을 구축하여야 함.

다. 세부추진과제

1) ‘숲의 도시 서울’ 정체성 확립

가) 목표

○ 배경

산과 산림 속에 탄생한 서울에 태생적 의미를 부여하고, 서울의 도시숲으로 서울의 미래 비전을 담은 의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출발

○ 목표

‘숲의 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숲의 도시’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강화함.

나) 추진방향

- ‘숲의 도시 서울’의 개념 설정과 ‘서울의 도시숲 명예의 전당’ 건립
- ‘숲의 도시 서울’의 조례 제정
- ‘숲의 도시 서울’을 이끌기 위한 조직 설립

다) 세부추진계획

㉠ ‘숲의 도시 서울’의 개념 설정과 ‘서울의 숲 명예의 전당’ 건립

- 사업유형: 예산사업
- 사업개요
 - ‘숲의 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업임.
 - 2000년 고도(古都)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서울의 도시숲과 조명하여 정체성 확립
- 기본방향
 - 서울의 산과 숲(산림)에 대한 역할 구명과 ‘숲의 도시 서울’의 개념 설정
 - ‘서울의 숲 명예의 전당’ 건립
- 세부내용
 - ① 서울의 산과 숲(산림)에 대한 역할 구명과 ‘숲의 도시 서울’의 개념 설정

- 숲과 인간의 삶(인류문화)에 관한 관계설정
- 서울의 입지적 특성 조명: 서울 주변의 지형, 지세, 지리에 대한 조명
- 2000년 서울의 역사를 산림의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재조명
- 서울 시민의 삶과 주변 산과의 역사적인 관계 설정
- 한양 도읍 축성과정에서 산림자원과의 관계 설정
 - 도성 건축물과 산림, 특히 왕궁 건축과 소나무와의 관계
- 이상의 종합된 내용을 근거로 ‘숲의 도시 서울’의 개념을 설정함.

② ‘서울의 숲 명예의 전당’ 건립 추진

- ‘숲의 도시 서울’을 이끌어 온 역사적 인물 발굴과 평가
 - 서울의 숲에 대한 자긍심과 애림사상과 자연보호,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함.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함.
 - 각 분야별(서울 산림보호 및 조성, 산림교육 및 연구, 산림문화예술 창작 등)로 선정 검토
 - ‘서울의 숲 명예의 전당’ 건립, 2년마다 선정 및 시상(1000만원)
 - ‘서울의 숲 명예의 전당’의 건립 위치 선정 고려사항
 - 가장 오래된 나무가 서 있는 지역 주변
 - 가장 오래된 고령급의 수림이 있는 곳
 - 또는 오래된 노거수 등이 있는 공원이 위치한 곳 등



그림 116. 국립수목원 숲의 명예의 전당(좌로부터: 박정희, 김이만, 현신규, 임종국, 민병갈, 최종현)

○ 예상일정 : 장기사업

○ 사업규모 및 예산

단위: 백만 원

사업	사업 추진 연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서울의 숲과 시민의 삶 발간	150		150									
서울의 숲 역사인물 발굴사업	75			15		15		15		15		15
서울의 숲 명예의 전당 건립	300			300								
계	525		150	315		15		15		15		15

참고 (필요한 경우) ‘숲의 도시 서울’ 헌장 제정

- 사업유형 : 예산/비예산사업
- 사업개요
 - 목적: 서울이 숲의 도시 라는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산과 나무와 숲을 통해서 삶이 이어져 왔음을 알려 산과 나무와 숲을 잘 아끼고 보호하도록 계몽하고자 하는 것임.
 - ‘숲의 도시 서울’ 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함.
 -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헌장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추진방법
 - 헌장 제정 준비위원회 조직(서울에 대한 인문사회, 자연과학, 산림 전문가 포함,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
 - 헌장의 건립은 ‘서울의 숲 명예의 전당’ 에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내 사례
 - 산림청은 2002년 ‘산림헌장’ 을 제정하여 식목일을 기해 포천 국립수목원에 건립함으로써 국민이 우리 산림에 담긴 고귀한 의미와 가치를 기리고 산림을 잘 가꾸자는 각오를 다짐하고 있음.



그림 117. 2002년에 제정한 산림헌장(국립수목원)

○ 사업규모 및 예산

단위: 백만 원

사업	사업 추진 연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헌장 제막	200					200						
계	200					200						

② '숲의 도시 서울' 을 위한 조례 제정

○ 사업유형 : 비예산사업(자체사업으로 추진)

○ 사업개요

'숲의 도시 서울'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산림문화·휴양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 기본방향

-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문화·휴양 진흥과 산림관리조직의 설립 근거를 마련
- 조례제정은 2017년 하반기 또는 2018년 상반기 중에 완료 목표로 추진

○ 세부내용

- 구성: 제1장 총칙(1~3조), 제2장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의 수립·시행(4~7조), 제3장 서울특별시 도시숲 환경연구소(8~15조), 제4장 보칙

'숲의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산림문화·휴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시행 2017.00.00] [서울특별시조례 제0000호, 2017.00.00, 제정]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02-2133-39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산림문화·휴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숲의 도시 서울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문화·휴양"이라 함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산림욕장"(山林浴場)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5.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8.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0.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11.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2. "산림복지소외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3.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란 산림복지소외자가 각종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14.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란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5. "산림복지전문가"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숲해설가
-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 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숲길체험지도사
-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 16. "산림복지전문업"이란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7. "산림복지지구"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18. "산림복지시설"이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또는 산림교육센터
 - 다.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산림복지단지 운영에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19. "산림복지단지"란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산림복지시설로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산림문화·휴양 진흥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산림문화·휴양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 산림문화·휴양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문화·휴양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문화·휴양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산림문화·휴양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이용·관리 및 확충 등에 관한 사항
5.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 및 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산림문화·휴양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문화·휴양에 관련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산림문화·휴양 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관할구역의 산림을 활용한 산림휴양, 치유, 문화, 교육 등 산림문화·휴양 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산림문화·휴양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그 밖에 시민의 산림문화·휴양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 대학 및 관내 교육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 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림휴양·산림치유·산림교육·산림문화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유용한 산림문화자산을 발굴·보전하여 숲의 도시 서울의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문화·휴양 진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에게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사회적·정서적 복리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산림복지소외자가 각종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여 산림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하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숲해설가 등 산림복지전문가의 활동과 산림복지전문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시민이 충분하고도 원활하게 산림복지서비스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사업추진 등)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및 대학,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자료 요구)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 도시숲 환경연구소

제8조(서울특별시 도시숲 환경연구소) 시장은 시민에게 산림문화·휴양활동을 진작하는 한편, 숲의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숲 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업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 산림자원의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환경적 가치를 발굴·보전·이용에 관한 연구
2. 산림문화·휴양 정책개발 및 연구
3. 산림문화·휴양 진흥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4. 자치구와 연구소 간의 연계체계 구축
5. 산림문화·휴양 관계자 연수
6. 산림문화·휴양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7. 산림문화·휴양 관련 동아리 육성·활동지원
8. 소외계층에 대한 산림문화·휴양 활동 참여 지원
9. 자치구 등에 대한 산림문화·휴양 진흥사업 지원
10. 자치구 등에 대한 산림문화·휴양 진흥사업 평가 및 지도
11. 시민의 산림문화·휴양 활동 참여확산을 위한 사업
12. 도시임업진흥을 위한 사업
13.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 관련 연구
14. 그 밖에 산림문화·휴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조직 및 시설)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연구소에는 제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연구소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운영경비)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수익금 및 수수료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직원 배치) ① 연구소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직원 배치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사업년도) 연구소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의 승인 등) ① 연구소는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연구소는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연구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구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연구소와 관련된 지원경비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연구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연구소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 업무의 일부

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0000호, 2017.00.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숲의 도시 서울' 을 이끌기 위한 조직 설립

○ 사업유형 : 예산사업

○ 사업개요

- 서울시 전체 산림의 관장은 물론, '숲의 도시 서울' 정립과 산림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서울의 숲으로 국제도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임.

○ 기본방향

- (가칭)서울특별시 도시숲 환경연구소 설립을 추진함.
- 우선 소규모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함.

○ 세부내용

- 산림문화·휴양을 담당하는 부서와 일반 산림환경을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함.
- 2부 7팀, 나무병원을 포함하는 조직으로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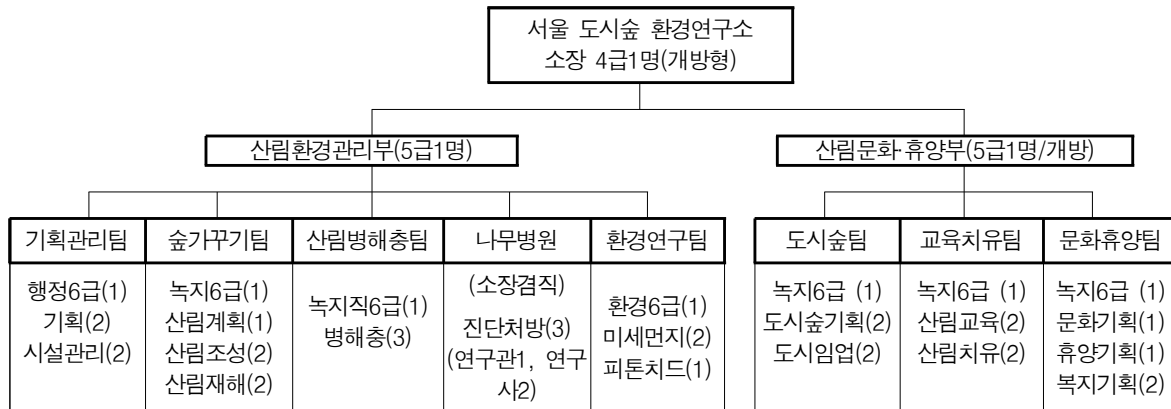


그림 118. 서울 도시숲 환경연구소 조직체계(안)

- 주요업무 : '숲의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산림문화·휴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 9조에 명시
 - 산림환경관리부: 병해충을 포함하여 서울시 소재 산림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
 - 기획관리팀: 산림환경관리 장기계획 수립, 각종 시설관리 업무
 - 숲가꾸기팀: 조림, 육림업무 담당
 - 산림병해충팀: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업무
 - 나무병원: 수목 및 산림병해 진단, 처방방안 연구, 병해충 연구 업무
 - 환경연구팀: 산림에 의한 미세먼지 대책 연구, 피톤치드 측정 업무
 - 산림문화·휴양부: 도시숲의 문화적 휴양적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
 - 도시숲팀: 도시숲의 활용계획 수립, 도시임업 진흥 방안 연구
 - 교육치유팀: 각종 산림환경교육 및 산림치유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 문화휴양팀: 산림복지계획 수립, 산림복지지원 방안 연구, 각종 문화 및 휴양 프로그램 개발
- 규모: 총 41명
 - 일반직 24명 : 5급1, 6급5, 7급8, 8-9급(10)
 - 개방형/임기제17명 : 4급 1명, 5급1, 6급3, 7급6, 8-9급(6)
- 단계별 인력투입

투입시기	인원	추진업무
계	41명	
1단계 (2019. 1 ~)	14명 (소장1, 부장1, 팀장4, 팀원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발족, 부분개소 준비 ▪ 산림기초자료 조사수집
2단계 (2019. 7 ~)	18명 (부장1, 팀장3, 팀원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의 도시 서울 장기계획 수립 ▪ 산림복지 및 휴양치유시설 계획 수립 ▪ 산림환경관리계획 수립(병해충 포함)
3단계 (2020. 1 ~)	9명 (팀원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복지정책추진(바우처 등) ▪ 산림휴양치유시설 배치

- 추진계획
 - 4급 조직 행정자치부 협의, 관련 조례 개정(2018. 상반기, 조직담당관)
 - 서울 도시숲 환경연구소 조직 발족(2019. 3월)

○ 국내 사례

-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3개 과, 2개 지원, 1개 센터로 구성되고 총원 76명임.
-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6개 팀으로 구성되며 총원 95명임.
- 강원도 산림과학원은 1과, 1실, 1지원으로 구성되며 총원 95명임.

표 112.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의 조직

직책	원장	관리 운영과	산림 환경과	산림 사업과	북부지원 (안동)	서부지원 (김천)	사방기술교육 센터(포항)	총원
인원	1	8	19	12	13	17	6	76

표 113.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의 조직

직책	소장	도유림 관리팀	휴양림 관리1팀	휴양림 관리2팀	산림토목팀	나무연구팀	수목원 관리팀	총원
인원	1	23	11	11	11	14	24	95

표 114.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소의 조직

직책	원장	관리 운영과				임업연구실			동부지원		총원
		총무	도유림 경영	산림공원	산림휴양 시설	산림환경	임업생산	자원보호	조성관리	산림산업	
인원	1	8	7	8	13	8	5	5	15	3	73

표 115.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조직

직책	소장	관리과				입업시험과				태안사무소				보령사무소		총원	
		사무팀	시설 관리팀	박물관 운영팀	산림 휴양팀	산림 자원 연구팀	환경 입업 연구팀	임업 생산 연구팀	밤 연구팀	사무팀	재산 관리팀	경영팀	휴양팀	수목원 정원팀	재산 관리팀		경영팀
인원	1	14	6	6	4	6	5	4	3	5	7	3	8	4	6	4	86

2) ‘숲의 도시 서울’의 요소 발굴과 활용방안

가) 목표

○ 목표

‘숲의 도시 서울’이 지닌 산, 나무, 숲 등과 관련된 역사문화적 잠재력을 발굴하여 선조의 문화자산을 보전 계승하는 한편, 산림문화·휴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나) 추진방향

○ 서울 산림문화자산의 조사발굴과 목록화

○ <산림치유 잠재력 예보 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휴양치유 사업)

다) 세부추진계획

㉠ 서울 산림문화자산의 조사발굴과 목록화

○ 사업유형 : 예산사업

○ 사업개요

서울시 소재 산림문화자원을 조사발굴하고 목록화하여 국가 산림문화자산, 시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

○ 기본방향

- 서울시 전체의 유무형적 산림문화자산 발굴과 목록화
- 목록화된 산림문화자산의 분류와 국가 및 시도 산림문화자산 지정신청 추진
- 산림문화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 세부내용

- 산림문화자산 잠재력 파악
 - 서울은 국가의 수도로서 성장해 왔고 우리나라 문화자산의 보고이기 때문에 잠재적 산림문화자산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산림청 등록 국가산림문화자산 26건 중 현재 서울시 소관 등록된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없음.
- 산림문화자산 발굴과 목록화 및 활용
 - 각종 산림문화자원을 조사발굴하여 목록화 사업을 추진
 - 각 구청별로 추진하거나 본청에서 조사용역으로 발주
 - 각종 산림문화·휴양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활용 방안 제시
 - 발굴된 산림문화자산은 숲해설 자료나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산림문화·휴양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의 홍보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산림문화자산 조사방법 및 지정절차
 - 산림문화자산의 조사와 지정절차는 산림청의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예규 제634호)에 의거 실시함.
 - 산림문화자산의 구분은 지정 후 관리자에 따라서 국가산림문화자산(국가기관)과 시도 산림문화자산(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분하고, 형태에 따라서 유형산림문화자산, 무형산림문화자산으로 구분함(아래 표 116 참조).
-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 수요증가에 따라 향후 산림문화자산의 발굴과 관리 및 활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이에 맞춰 서울에 잠재된 산림문화자원을 조사발굴하여 산림문화자산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지역의 산림문화·휴양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참고	산림청의 산림문화자산 발굴·관리·활용 체계 구축 사업
산림문화자원을 발굴하여 목록화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산림청의 제6차 산림기본계획(안)의 내용과 정합성을 지님. 8개 전략과제의 하나인 '일상 속의 산림복지체계 정착'을 추진하는 주요과제의 하나로 '산림문화·휴양 인프라확충 및 서비스 품질개선'의 추진방안으로 '산림문화자산 발굴·관리·활용 체계 구축'에 정합성을 지니고 있음. 이계획에 따르면 산림청은 매년 유·무형의 산림문화자산을 5개소 이상 발굴·보존할 계획임. 문화자산 관련 전통지식을 발굴 보존하여 체계화하고 널리 홍보하며 국가 산악 박물관과 함께 지속적인 산림문화 유산 수집, 정리, 전시할 예정임.	
<small>산림청(2017). 제6차 산림기본계획(안).</small>	

표 116. 산림문화자산의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유형 산림문화자산 (고정)	숲	마을숲, 사찰림(숲), 거리숲(가로수), 보전대상숲, 산림사업지, 기념물(보호림), 종중림, 능림, 서원림
	산(명승)	100대 명산,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산 등 명승 등
	나무	천연기념물, 보호수, 당산목, 특정목적수, 기념식수, 기타(문화예술작품 등장 나무)
	자연물	바위(암봉), 명문새겨진바위, 샘(우물터, 약수터), 계곡, 폭포, 강발원지, 옛길(고갯길), 동굴, 산림습지(늪), 작품배경장소, 화석류, 기타(특이지역지물)
	사적 및 근대유산	근대 치산치수 시설물, 근대건축물, 근대 수목원 및 휴양시설물, 유적, 전통정원(원림), 제단
	목조건축물	관아건축물, 사원건축물, 주거건축물, 기타 건축물(탑, 누각, 정자)
유형 산림문화자산 (유동)	기록	금석각류/비, 목판각류/판목류, 전적류(고전 문헌), 사진 및 영상물
	목재(나무)	기념물(문화재), 선박, 생활용구·농기구·가구·기타, 고유악기, 무기, 산림작업 도구, 장승
	의복 및 음식	산림에서 유래된 의복, 산림에서 유래된 음식
	화석	산림관련 화석
무형 산림문화자산	구전	전설, 민요·소리
	민간신앙 및 민속	마을신앙, 가신, 민속
	기술 및 지식	산림관련 전통기술
	전통의식	임업관련의식 및 의례, 산림관련 축제(산촌지역축제), 기념식, 춤/무용
	중요 인간문화재 등	목재관련(목수 등), 소리 관련, 춤 관련, 숲명예의 전당 헌정 인가
역사적 문헌 저술자	전문 임업서적 저술자, 종합농업서적저술자	

○ 국내 사례 : 산림청과 서울시(지정보호수 관리 사업과 큰나무 등록제 자료관리)

- 산림청은 매년 산림문화자산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도에서 신청한 산림문화자산을 심의 지정하고 있으며, 2016년 말 현재 전국의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건수는 모두 26건임(표 117 참조).
- 서울시는 아직 시도하지 않고 있지만 푸른도시국의 ‘지정보호수관리’ 사업과 ‘큰나무등록제 자료관리’ 사업은 산림문화자산 조사발굴 및 목록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사점이 많음.



그림 119.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방동약수, 모정탑, 사자산 황장금표

표 117.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현황(2016년)

번호	명칭	소재지	관리자(소유자)
1	홍릉숲	서울 동대문구 국립산림과학원 내	국립산림과학원장
2	화천 동촌 황장금표	화천군 화천읍 동촌1리	북부지방산림청장
3	영월 법흥 황장금표	강원도 영월군 사자산	영월군수
4	평창 평안 봉산동계표석	강원도 평창군 평안리	평창군수
5	인제 미산 산삼가현산 서표1	강원도 인제군 미산리	인제군수
6	인제 미산 산삼가현산 서표2	강원도 인제군 미산리	인제군수
7	대관령 특수조림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동부지방산림청장
8	방동약수 및 음나무	강원도 인제군 방동약수	동부지방산림청장
9	인제 한계 황장금표 및 황장목림	강원도 인제군 한계리	설악산국립공원관리소장
10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담양군수
11	완도수목원 가시나무 숲가마터	전남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완도수목원장
12	해남 관두산 풍혈 및 샘	전남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해남군수
13	울진 소광 황장봉산 동계표석	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리	울진국유림관리소장
14	강릉 노추산 삼천 모정탑	강원 강릉 왕산면 대기리	강릉국유림관리소장
15	금강 발원지 뜬봉샘	전북 장수 장수읍 수분리	무주국유림관리소장
16	위봉폭포	전북 완주 동상면 수만리	정읍국유림관리소장
17	섬진강 발원지 데미샘	전북 진안 백운면 신암리	전라북도지사
18	나주 불회사 비자나무와 차나무 숲	전남 나주 다도면 미산리	대한불교조계종 불회사
19	울릉 도동 향나무(울릉석향)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남부지방산림청장
20	천관산 동백나무 숲가마터	전남 장흥군 관산읍 부평리	영암국유림관리소장
21	순천 고동산 신철쭉 자생지	전남 순천시 송광면 장안리	순천국유림관리소장
22	유달산 저수·저시댐과 사방시설	전남 목포시 운금동	목포시장
23	고흥나로도 편백 숲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전라남도지사
24	부안 서림공원과 임정유애비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부안군수
25	남원 구룡계곡 구룡폭 구곡	전북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국토교통부장관
26	남원 신기마을 비보림과 축성표석	전북 남원시 운봉읍 신기리	신기리 이장

출처: 산림청 홈페이지(2017)

○ 예상일정 : 단기사업으로 추진

○ 사업규모 및 예산

단위: 백만 원

사업	사업 추진 연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유형산림문화자산조사	100		100									
무형산림문화자산조사	100			100								
계	200		100	100								

참고1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절차
<p>■ 근거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예규 제634호)</p> <p>■ 지정절차(동 규정 제3조: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지정해제 절차 등)</p> <p>①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자(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유자별 지번·지목·지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2.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소유자 동의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지의 위치도(축척 1/25,000) 및 구역도(축척 1/6,000) 4. 사진(전경 및 근·원경) 5.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국가 산림문화자산 신청권자"라 한다)이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산림문화자산을 산림청장에게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면 해당 산림문화자산을 관할하는 다른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에 따라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한지를 조사하고, 공고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5조에 따른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p> <p>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심사되면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참고2	시·도 산림문화자산 지정절차
<p>■ 근거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예규 제634호)</p> <p>■ 지정절차(동 규정 제4조: 시·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지정해제 절차 등)</p> <p>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유자별 지번·지목·지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2.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소유자 동의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지의 위치도(축척 1/25,000) 및 구역도(축척 1/6,000) 4. 사진(전경 및 근·원경) 5.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p>②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시·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산림문화자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③ 제2항에 따라 시·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시·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신청을 받은 경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한지를 조사하고, 공고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의 시·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시·도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참고3 **산림문화자산 종류 및 지정 기준**

- 근거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 지정기준(동 규정 제2조: 산림문화자산의 세부지정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정기준
유형 산림 문화 자산	숲	마을숲	방풍림, 어부림, 호안림, 성황림 등 전통마을숲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도시숲	가로수나 도심 내 숲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목재생산숲	봉표, 금표가 있었거나 있는 목재생산숲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사찰림	사찰을 둘러싸고 있고 보존가치가 높은 숲
		서원림	서원을 둘러싸고 있고 보존가치가 높은 숲
		종중림	종중림 중 보존가치가 높은 숲
		서식지	희귀, 특산식물 등의 서식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숲
		군락지	희귀, 특산식물 등의 군락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숲
		자생지	희귀, 특산식물 등의 자생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숲
		문화림	민간에 전승되는 유래·전설이 있거나 문화예술작품에 등장하는 숲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산림사업지	조림성공지, 사방사업지, 시험림 등 역사적 의미가 큰 산림사업지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숲이나 생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서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나무	보호수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특이나무	노목, 거목, 희귀목, 기형목, 당산목 등 특이성이 큰 나무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념식수목	국가수반급 기념식수목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특정목적수	나무기준 표본목, 송진이나 옷 채취목 등 특정 목적을 위한 나무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문화나무	민간에 전승되는 유래·전설이 있거나 문화예술작품에 등장하는 나무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나무이나 생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서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자연물	옛길	민간에 전승되는 유래·전설이 있는 산 속 고개나 길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바위	특이한 형상을 가졌거나 유래가 있는 바위, 명문이 새겨진 바위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샘	산림 혹은 임업과 관련이 높은 샘, 주요 강의 발원지(소), 지역적으로 특수성을 포함한 유명 약수터, 우물 등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계곡·폭포	계곡·폭포 중에서 산림관련 유래가 있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것
		동굴	동굴 중에서 산림관련 유래가 있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것
		화석지	동식물 화석지로 생태적, 역사적, 학술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물이나 생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서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사적 및 근대 유산	제단	산제단, 사직단, 여단, 천제단, 성황당 등 제단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정원	정원(원림)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건축물	민가, 고택, 향교, 서원, 누각, 정자, 근대 건축물 등 중에서 목재를 소재로 하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것
		시설물	조림공로비, 기념비, 사방시설물, 표석, 임도 등 시설물 중에서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
		유적지	산성, 사찰터, 봉수터, 화전마을, 숯가마터, 화랑도량터, 돌탑 등 유적지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 및 근대유산이나 생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서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정기준	
	기록물	금석각류	봉표, 금표 등 금석각류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목판각류	목판각류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전적류	전적류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사진 및 영상물	사진자료, 영상물, 음향물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록물이나 생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서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목재제품	생활용품	농기구, 산림작업도구, 어령구, 방직용구, 음식용구, 공장용구, 공예품, 가구 등 목재로 만든 생활용품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선박	연대가 오래된 목조 선박이나 관련 부속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악기류	고유악기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무기류	죽시, 궁시 등 무기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장승	장승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화석	동물	동물 화석으로 생태적, 역사적, 학술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	
		식물	식물 화석으로 생태적, 역사적, 학술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	
	조합형	조합형	2개 이상의 소분류의 산림문화자산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생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서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무형 산림 문화 자산	구전	전설	산림이나 임업과 관련한 전설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민요·소리	산림이나 임업과 관련한 민요·소리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전이나 예술적·역사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민간 신앙 및 민속	마을신앙	산림이나 임업과 관련된 당제, 산신제 등 마을신앙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가옥신앙			산림이나 임업과 관련된 가옥관련 신앙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민속			산림이나 임업과 관련된 고유 민속이나 놀이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신앙 및 민속이나 예술적·역사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전통 기술 및 지식		전통기술	산림사업, 임산물, 목재 가공 관련 전통기술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지식	수목 등을 활용한 전통 의학지식 등 산림관련 지식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통기술 및 지식이나 예술적·역사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전통 의식		의식·의례	산판굿, 입산제, 별목의식 등 산림 및 임업과 관련된 전통의식·의례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전통축제	지역 고유의 전통 축제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통기술 및 지식이나 예술적·역사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서울시 관련 사업	푸른도시국의 '지정보호수 관리' 사업
<p>■ 목적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역사적으로나 분류학적, 유전·육종학적으로 특별히 보호 및 보존할 가치가 있는 보호수의 건강한 생육 도모</p> <p>■ 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으로나 분류학적, 유전·육종학적으로 가치있는 수목의 보호 보호수의 건강한 생육환경 도모 <p>■ 보호수 지정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대상 및 요건 :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0.3.10.시행)에 의거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보호수 규격의 선정기준에 알맞는 지정대상목 선정 지정절차: 보호수 지정계획수립 및 시달(시→자치구) → 지정대상 자치구 현장조사(자치구) → 지정 대상 현장조사결과 통보(자치구→시) → 지정 대상 전문가 합동조사(시, 전문가, 자치구) → 합동조사결과 후 지정결정(시) → 지정보호수 시보게재(공고및고시)(시) <p style="text-align: right;">☞ 2017년 주요업무 추진지침. 285쪽.</p>	

■ 목적

- 큰나무등록제를 통해 기 구축된 가로수 등 공간데이터의 정확성, 효율성을 위해 입력자료의 우리지 표준안을 만들고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 전산화된 가로수관리대장의 작성 등 자료의 지속적인 활용에 있음.

■ 주제도편집시스템 활용

- 공간정보 S/W로서 가로수 등의 수목명, 흉고직경, 수고, 위치 등 대상수목(가로수, 큰나무, 보호수 등)의 일련의 속성정보(공간데이터)를 본 시스템에 입력하여 공간데이터들을 획득, 관리, 확장하고 분석하며 결과물을 표현함.

■ 시사점

- 서울시 산림문화자산을 조사발굴하여 큰나무등록제처럼 본 시스템에 입력하면 활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
- 큰나무뿐 만아니라 오래된 숲(노령임분, 고령급 수림 등)도 등록 관리할 수 있을 것임.

2 <산림치유 잠재력 예보 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

○ 사업유형 : 예산사업

○ 사업개요

- ‘숲의 도시 서울’의 산림휴양의 질 상태(또는 산림치유 잠재력)를 일기예보처럼 보여주는 ‘산림치유(산림휴양) 예보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
- 홈페이지 등에 예보하면 시민들은 예보상태를 살펴보고 희망하는 휴양지역으로 가서 활동함.

○ 기본방향

- 매일 매일의 대기질을 예보 하듯이 산림치유 잠재력 상황을 예보하는 시스템
- 서울시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잠재력을 예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
- 예보시스템을 본청(구청)홈페이지에 올리면 시민이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함.
- 지역의 임상(林相) 및 기상상황에 따라 산림치유 잠재력을, 예를 들면, 0~100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세부내용 : 국내 연구진이 산림청 연구과제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에 있음.

• 시스템 개발 과정

① 산림치유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인자를 선정: 3개 인자 군으로 구분

- 산림환경인자: 임황(임상, 소밀도, 영급, 경급 등), 지형(고도, 향, 경사 등), 시각자원(경관) 등
- 기상환경인자 : 온도, 습도, 일조량, 음이온, 공기의 질, 풍속 등을 고려한 데이터 확보
- 생리화학적 인자 : 피톤치드, 광합성 등

② 산림치유 지표선정 및 지수화

- 산림치유 효과인자 중 산림치유효과에 기여하는 경중에 따라서 대표적인 지표를 선정하고
- 선정된 지표와 기상인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선정된 지표를 지수화함.

③ 휴양자원의 산림치유 잠재력 평가 및 예보 시스템 구축

- 지수화 처리된 모델식을 정보화 처리된 자연휴양림 등에 적용하여 산림치유 잠재력을 평가함.
- 평가된 산림치유 잠재력은 해당 산림의 산림치유 효과를 나타내는 산림치유지수임(그림 118).
- 산림치유지수는 매일의 기상인자(온도, 습도, 바람 등)와 연동하여 예보할 수 있게 됨.
- 산림치유지수는 0~1, 또는 0~100%로 구분할 수 있으며 높을수록 산림치유잠재력이 큰 것임.

④ 구축된 예보시스템을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탑재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치유의 숲 등 관리기관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국민에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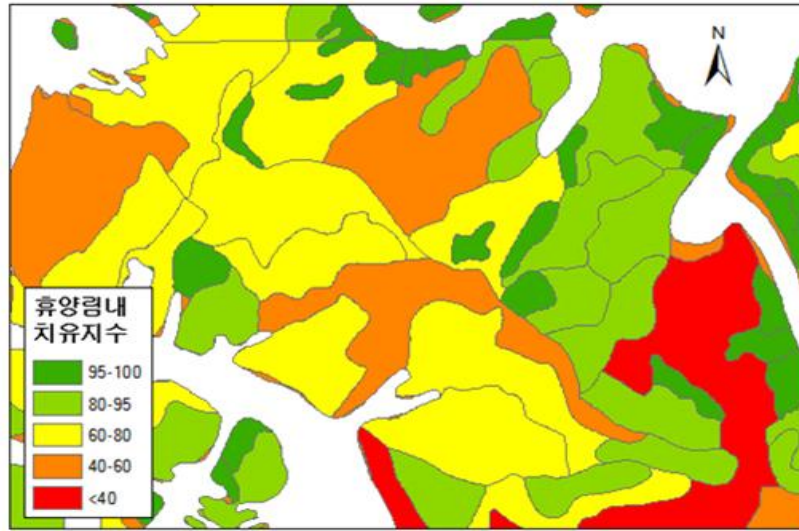


그림 120. 예상 산림치유 잠재력 예보 상황도

- 예상일정 : 중기과제로 추진
- 사업규모 및 예산

단위: 백만 원

사업	사업 추진 연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시스템개발	350		100	100	150							
계	350		100	100	150							

3) ‘숲의 도시 서울’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방안

가) 목표

- 목표

‘숲의 도시 서울’의 자연문화 예술적 이미지 연출을 통해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제도시로서의 품격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나) 추진방향

- ‘숲의 도시 서울’ 정체성을 위한 산림문화예술 사업 발굴
- ‘숲의 도시 서울’ 선도를 위한 전국 규모 행사 유치

다) 세부추진계획

① ‘숲의 도시 서울’ 정체성을 위한 산림문화예술 사업 발굴

- 사업유형 : 예산사업

○ 사업개요

‘숲의 도시 서울’의 정체성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산/산악/나무/숲을 찬미하는 산림문화예술 창작 사업을 추진함.

○ 기본방향

- 글로벌 도시로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서울의 역사와 문화예술성에 알맞은 창작사업 발굴
- ‘숲의 도시 서울’에 걸맞은 나무와 숲, 식물을 활용한 창작물 제작

○ 세부내용 : 7개 창작사업 추진

- 창작사업1 : (가칭) 서울 산림/숲 교향곡(또는 서울산악교향곡/서울산악교향시) 창작

※ 참고: 리스트의 『산악교향곡』, 요한슈트라우스(II)의 『빈 숲속의 이야기』

- 국제 현상 공모(창작음악콩쿨 개최)
- 입상작을 5월 축제에서 공연형식으로 발표회 개최

- 창작사업2 : 『‘숲의 도시 서울’ 산림문화대계(大系)』 발간

- 서울의 산, 나무 등 식물이 서울 시민(전 국민)의 삶(=문화)에 끼친 영향 집대성
- 서울 산림의 역사, 서울의 산림과 미술, 서울의 산림과 문학, 서울의 산림과 음악, 서울의 산림과 종교, 서울의 산림과 민속, 서울의 산림과 건축 등

- 창작사업3: 『‘숲의 도시 서울’의 숲과 나무』

- 형성과정 등 역사, 자원, 경관, 생태, 노거수 등 수록

- 창작사업4: 『‘숲의 도시 서울’ 나무/식물 달력』

- 서울의 역사, 문화, 발전과정에서 의미 있는 나무를 월별 12종 선정하여 제작
- 또는 서울에 분포하는 365개 수종과 월별 대표 수종 12그룹을 선정하여 달력 등으로 제작 판매
- 매년 제작하면 ‘숲의 도시 서울’의 나무와 숲에 대한 관심이 커져 홍보효과도 기대하게 됨.
- 또한 주요 식물의 식물계절을 안내하는 정보를 주요 숲길(둘레길 등), 공원녹지 등에 안내판으로 표시를 해두면 시민들의 서울 환경인식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서울시에 분포하는 식물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가 유용함.

☞ 국립산림과학원(2011). 『북악의 나무와 풀』. 120개 목본과 80개 초본을 소개하고 있음.

- 게르만의 선조인 켈트족의 나무달력은 잘 알려져 있으며, 오스트리아 빈의 경우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산림공원으로 복원하여 산림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그림 121. 켈트족의 나무달력(좌)과 이를 현대에 되살린 공원(우: 빈 산림지대)

- 창작사업5: ‘숲의 도시 서울’ 의 춤과 노래(전통) 발굴
 - ※ 사례 : 남산팔영(南山八詠)은 조선시대 남산의 아름다움을 읊은 것으로서 현대적으로 살려 홍보하면 남산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남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 「남산팔영 고증 및 신남산팔영 제안(안)」 연구 학술용역 참조(서울학연구소, 2016).
- 창작사업6: ‘숲의 도시 서울’ 도시숲박람회 개최
 - 2년 주기로 산/산악/나무/숲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다룸(산업적, 문화적 부문 총망라)
- 창작사업7: 『실바 서울』(Silva Seoul) 발간
 - 숲의 도시의 숲(나무와 숲)과 관련된 월간지/격월간지(민간단체, 시민주도)
 - 산림복지분야(산림문화, 휴양, 치유, 교육 등) 전반을 아우르는 정기간행물

○ 예상일정 : 장기사업으로 추진

○ 사업규모 및 예산

단위: 백만 원

사업	사업 추진 연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창작사업1 서울 교향곡 창작	500				200	300						
창작사업2 서울 숲의 도시대계	600		100	100	100	100	100	100				
창작사업3 서울의 숲과 나무	150		150									
창작사업4 서울 나무 달력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창작사업5 서울의 춤과 노래발굴	100			100								
창작사업6 서울 도시숲박람회	1,000			200		200		200		200		200
창작사업7 실바 서울 발간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계	4,350		450	600	500	800	300	500	200	400	200	400

유사 사례

오스트리아 빈의 도시숲 활용

- 오스트리아 빈(Wien)의 숲을 비너발트(Wienerwald)라고 부름.
- 빈이라는 유서깊은 古都을 둘러싸고 있는 비너발트는 문화예술의 거장들의 창작공간이었음.
- 비너발트의 역사문화적 의의와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활용방안 : 각종 나무와 숲 관련 발간물 및 홍보문건 등을 파악하여 서울의 숲을 알리고 보전하는데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좌: 빈 시 숲의 수원함양능력 홍보물. 중: 빈 숲을 알리는 각종 홍보물, 우: 384쪽짜리 대형 빈 숲 안내물)

그림 122. 빈과 빈의 숲을 알리는 각종 간행물들

② '숲의 도시 서울' 선도를 위한 전국 규모 행사 유치

○ 사업유형 : 예산사업

○ 사업개요

산림문화·휴양 관련 전국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여 산림문화·휴양 분야를 진작시키고 숲의 도시 서울을 홍보하는 것임.

○ 기본방향

- 산림청 등 유관기관의 산림이나 산림문화·휴양에 관련된 전국 규모 행사를 적극 유치
- 산림관련 대규모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숲의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강화

○ 세부내용

- 산림청 등 유관기관의 산림문화·휴양 관련 전국 규모 행사
 -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의 산림문화박람회, 자연휴양림 휴 문화 축제(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 숲 교육 어울림(산림청 교육치유과) 등 3대 행사가 있음.
- 행사 유치의 필요성과 효과
 - 행사유치의 필요성 : '숲의 도시 서울'의 이미지 제고, 산림문화·휴양 산업의 진작
 - 행사유치의 효과 : 시민들에게 서울의 산림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관심을 갖게 하며, 서울 산림자원의 산업화(휴양치유, 목제품/목공예품, 교구재 등), 관광화로 이끌 수 있음.
- 세계산림총회(WFC, World Forestry Congress) 관련 행사 유치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주관으로 열리는 것으로 산림보존과 관리 등에 관해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림국제회의. 학계와 정부기관 간 협의체 성격의 회의로 6년마다 대륙별로 개최함.
 - 2021년 제15차 WFC는 '숲의 도시 서울'에서 개최하므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함. 미리 산림박람회, 휴문화한마당, 숲교육 어울림 행사를 경험삼아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 * 숲교육 어울림 행사 : 2017년 9~10월 중 서울시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함.
 - 서울 개최이므로 2021년 WFC 준비위원회 구성에 서울시 직원(자연생태과)이 참여하도록 협의

- 총회 프로그램에 숲의 도시 서울 관련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산림청 등 관련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함.



(좌: 산림문화박람회, 중: 숲교육어울림, 우: 자연휴양림 휴문화 한마당)

그림 123. 대한민국 3대 산림문화휴양행사

- 예상일정 : 장기사업으로 추진
- 사업규모 및 예산

단위: 백만 원

사업	사업 추진 연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숲의 도시 서울 휴문화축제	1000			200		200		200		200		200
산림문화박람회	300					300						
숲교육 어울림	200				200							
세계산림총회	500					500						
계	2,000			200	200	1,000		200		200		200